

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**충청북도의회**  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꽃임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4년 8월 23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6일

3. 제안이유

본 조례의 개정은 농촌체험관광 관련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체험마을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함 (안 제2·4조)
- 농촌체험관광 지원사업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함 (안 제7조)
- 충청북도농촌체험관광정책협의회 규정을 신설(안 제8조의2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가. 발의배경

-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농촌에서 체험하고 힐링하는 농촌관광의

핵심 콘텐츠로서, 도시권과 지방의 교류 촉진, 지방의 발전, 농촌체험에 의한 교육 및 치유,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와 농가 소득원 등으로 역할을 해왔음

-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, 관광 트렌드의 변화와 해외 여행객의 증가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급감하였으며, 이와 더불어 관리운영 부실 등으로 존폐위기에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

- 충북 농촌체험휴양마을 : 총 78개소로 운영 중 64개소 / 미운영 14개소
- 매출 : 최저마을 40만원(방문객 30명) / 최고마을 9억9천4백만원(방문객 312,420명)

- 이에 농촌체험관광 관련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체험마을의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조례의 개정을 추진함

#### 나.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

-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인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본 조문의 개정은 타당함
- 안 제4조는 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인용된 조례명의 오기를 바로잡은 것으로 조문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- 안 제5조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

- 안 제7조~제8조 및 제9조~제10조는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됨
- 안 제8조의2는 농촌체험관광정책협의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점에서 필요하다 판단됨

#### 다. 상위법령 등 검토

-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르면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” 고 되어있고, 동조 제2항에 따르면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” 고 명시하고 있음
- 이에 상위법령에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정책 수립·시행과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바 농촌체험관광 지원사업과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#### 라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본 조례의 개정은 침체된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 하기위해 관련 지원사업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고, 농촌체험관

광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책 소통의 창구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짐

- (타당성) 본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충북의 여건에 맞게 지원사항 및 농촌체험관광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으며,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- (법적합성)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- (종합의견)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필요성,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

향후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를 바탕으로 충청북도만의 차별화된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체험마을을 더욱 활성화하고 농촌체험관광정책협의회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